| 고용노동부 | 보 도 자 료 | 휴먼뉴딜 한국판뉴딜 |
|---|---|---|

| 보도일시 | 2021. 12. 30.(목) 조간 *인터넷 2021. 12. 29.(수) 12:00 이후 / 총 4쪽 | | |
|---|---|---|---|
| 담당부서 | 고용노동부 산재보상정책과 | 과 장 오태웅<br>서기관 고병곤<br>사무관 김영수 | 044-202-8830<br>044-202-8832<br>044-202-8834 |

< 본 자료는 http://www.moel.go.kr 에서도 볼 수 있습니다. >

# 내년도 산재보험료율 올해 수준으로 동결(1.53%)

■ **'22년도 산재보험료율 1.53%**

- **전 업종 평균 1.43% + 출퇴근재해 요율 0.10%**

■ **산재보험 요양급여 인정 대상과 수준 확대**

- **한방 '혈맥어혈검사' 신규 인정, 치과보철 및 보청기 비용 지급 확대 등**

□ 고용노동부(장관 안경덕)는 '21. 12. 30. **「'22년도 산재보험료율」** 및 **「산재보험 요양급여 산정기준」**을 공고한다.

○ **'22년도** 산재보험료율과 요양급여 산정기준은 노·사·공익위원으로 구성된 **「산업재해보상보험 및 예방심의위원회」**에서 다음과 같이 확정됐다.

## 【 '22년도 산재보험료율 1.53%로 동결 】

□ **산재보험료율**은 보험사업에 필요한 재원 마련을 위해 **매년 결정·고시**하고 있으며, **'22년 평균 산재보험료율**은 **올해와 같이 1.53%*를 유지**하기로 결정했다.

* 사업종류별 산재보험료율 1.43% + 출퇴근재해요율 0.10%

↳ 연도별 평균 산재보험료율 현황 : ('17.) 1.70, ('18.) 1.80, ('19.) 1.65, ('20.) 1.56, ('21.) 1.53

○ 코로나19에 따른 **기업과 종사자의 보험료 부담완화 필요, 소비자물가 상승** 등에 따른 경제적 부담 등을 **종합 고려**하여 **산재보험료율을 동결**했다.

□ 이와 함께 산재보험은 **코로나19 피해가 큰 200만개 사업장**에 대해 **총 5,868억원의 보험료 경감 또는 납부 기한 연장 조치**를 시행했으며,

○ **특수형태근로종사자 34만명과 그 사업장**에 대하여도 **총 142억원의 보험료 경감 또는 소급 징수 면제** 조치를 했다.

※ ① (코로나 피해지원) 보험료경감 192만 개소 3,931억원 / 납부기한 연장 8만 개소 1,937억원
② (특고 직종 지원) 보험료경감 30만명 128억원 / 보험료 소급징수 면제 4만명 14억원

○ 내년에도 **방역피해 사업장에 대한 보험료 경감**과 고위험·저소득 **특고 직종**에 대한 **산재보험료 부담완화 정책을 계속 추진**할 계획이다.

□ 한편, 최근 **산재보험급여 지급 확대**와 **연금부채 증가, 산재예방 사업 지출 급증**에 따라, 적정 보험료 수준 및 적립금 확보 방안 등에 대한 **연구용역을 실시할 예정**이다.

※ 보험급여 지출액(억원): ('19.) 55,294 → ('21.) 65,236 / 연금부채 ('16.) 41조 → ('20.) 57조
산재예방사업 예산액(억원): ('19.) 3,636 → ('20.) 4,997 → ('21.) 10,229 → ('22.) 10,922

## 【산재보험 요양급여 인정기준 확대】

□ 그동안 산재보험 요양급여로 인정되지 않았던 **한방 혈맥어혈검사***와 산재근로자가 부담하던 **진료내역서 발급 수수료가 새로 지원**된다.

* 맥파 전달시간·속도 측정을 통한 혈관의 협착이나 폐색 등 혈관질환 검사방법

○ 또한 **치과보철**에 대한 **지원금액을 인상**하고, 양쪽 청력 장해 시에만 지급하던 **보청기 구입 비용**을 **한쪽에만 장해가 있어도 지급**하도록 했다.

□ **고용노동부 권기섭 산업안전보건본부장**은 "내년도 **산재보험료율을 동결**함으로써 **코로나19 등에 따른 보험료 부담을 덜어주고,**

○ **요양급여 인정 대상과 수준을 확대**하여 **재해근로자가 안정적으로 치료와 재활에 전념**할 수 있도록 하는데 **주안점**을 두었다."라고 밝혔다.

OPEN 공공누리 출처표시 상업용금지 변경금지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

이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더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고용노동부 산재보상정책과 고병곤 서기관(☎044-202-8832, 요양급여), 김영수 사무관(☎044-202-8834, 보험료율)에게 연락해주시기 바랍니다.

**붙임1** 

# '22년도 사업종류별 산재보험료율

(단위: 천분율(‰))

| 사 업 종 류 | 요율 | 사 업 종 류 | 요율 |
|---|---|---|---|
| **1. 광업** | | **4. 건 설 업** | 36 |
| 석탄광업 및 채석업 | 185 | **5. 운수·창고·통신업** | |
| 석회석·금속·비금속 · 기타광업 | 57 | 철도·항공·창고·운수관련서비스업 | 8 |
| **2. 제조업** | | 육상 및 수상운수업 | 18 |
| 식료품 제조업 | 16 | 통신업 | 9 |
| 섬유 및 섬유제품 제조업 | 11 | **6. 임 업** | 58 |
| 목재 및 종이제품 제조업 | 20 | **7. 어 업** | 28 |
| 출판 · 인쇄 · 제본업 | 10 | **8. 농 업** | 20 |
| 화학 및 고무제품 제조업 | 13 | **9. 기타의 사업** | |
| 의약품·화장품·연탄·석유제품 제조업 | 7 | 시설관리 및 사업지원 서비스업 | 8 |
| 기계기구·금속·비금속광물제품 제조업 | 13 | 기타의 각종사업 | 9 |
| 금속제련업 | 10 | 전문·보건·교육·여가관련 서비스업 | 6 |
| 전기기계기구·정밀기구·전자제품 제조업 | 6 | 도소매·음식·숙박업 | 8 |
| 선박건조 및 수리업 | 24 | 부동산 및 임대업 | 7 |
| 수제품 및 기타제품 제조업 | 12 |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사업 | 9 |
| **3. 전기 · 가스 · 증기 · 수도사업** | 8 | **0. 금융 및 보험업** | 6 |
| | | * 해외파견자: 14/1,000 | |

2. 2022년도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으로 출퇴근하는 중 발생한 재해에 관한 산재보험료율: 전 업종 1.0/1,000 동일

* 사업종류의 세목과 내용예시 및 총칙을 규정한 사업종류 예시표는 고용노동부 홈페이지(www.moel.go.kr) 정보공개-법령정보-훈령·예규·고시란과 근로복지공단 홈페이지(www.kcomwel.or.kr) 가입·납부서비스-사업종류 검색-연도별 산재보험료율표에 게재

**붙임2** **'22년도 산재보험 요양급여 산정기준 개정 내용**

## 요양급여 확대 및 개선

❖ (급여신설) 2종

① '진료내역 확인 수수료' 신설

② 한방검사료 '혈맥어혈검사' 신설

❖ (수가인상) 4종

- 치과보철료 중 '3/4금관', '도재전장주조관-귀금속', '포스트-캐스트코아', 포스트-기성품'

❖ (인정범위 확대) 3종

① 보청기 지급대상 확대

② 재활치료료 중 '증식치료' 횟수 추가

③ '체온열검사' 횟수 추가

❖ (기준개선) 수가 산정방법 및 산정방법 개선

① 방사선 등 영상진단 필름·CD·DVD 및 진료기록부 등 복사 수수료 수가 적용방법 개선

② 화상 '자기유래배양피부이식술' 수가 산정방법 개선

## 국민건강보험 장애인 보조기기 변경사항 반영(서식 포함)

① 급여전환 재활보조기구 수리료 7종 삭제

② 장애인 보조기기 유형분류 및 명칭 변경사항 반영

## 문구 및 용어 정비 등

- '산재보험 의료기관' 법적 근거 명시 및 약칭 사용, 제3절 제목 변경 및 '진료기록전송지원시스템' 법적 근거 명시, 화상 약제 제조회사 변경사항 반영